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24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 의 자 : 신장식 · 김재원 · 최혁진
강경숙 · 박은정 · 김선민
차규근 · 서왕진 · 이해민
한창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산림조합 등의 조합장 임기를 4년으로 정하면서 상임 조합장에 한해서는 2차에 한해 연임규정을 두고, 비상임인 조합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한편, 퇴직자의 임원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비상임조합장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무제한 연임은 각종 채용비리 · 특혜성 대출 및 일감 몰아주기 등 조합등의 고질적인 폐단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징계면직 등의 위법행위를 한 후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등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조합등의 건

전한 경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39조 및 제125조의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임인 조합장은”을 “조합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연임하는 경우 조합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때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조합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제1항제6호 중 “제125조제1항”을 “제121조제3항, 제1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2. 제121조제3항, 제125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른 직무의 정지 또는 정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제121조제3항, 제125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

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제121조제3항, 제125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직무의 정지 또는 정직의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4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4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5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처분 내용의 통보) ① 산림청장과 회장은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 내용을 중앙회 또는 해당 조합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21조제3항, 제125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른 임원의 개선(改選) 또는 직무의 정지

2. 제121조제3항, 제125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른 직원의 징계면직 또는 정직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회 또는 조합등은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38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재임 중인 비상임조합장에 대해서 제38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제39조제1항(제122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처분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u>상임인 조합장은</u> 두 번까 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 립 당시의 조합장·이사 및 감 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2. (생 략) ② (생 략) <u><신 설></u>	제38조(임원의 임기) ① ----- ----- ----- ----- <u>조합장은</u> ----- -----. ----- -----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연 임하는 경우 조합장이 임기만 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 지 퇴임한 때에는 1회를 재임 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 라 퇴임한 조합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조합장으로 선 출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 로 본다.</u>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 5의2. (생략)

6. 제125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신설>

1. ~ 5의2. (현행과 같음)

6. 제121조제3항, 제125조제1항

6의2. 제121조제3항, 제125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른 직무의 정지 또는 정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제121조제3항, 제125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신 설>

7. ~ 13. (생 략)

② · ③ (생 략)

<신 설>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제121조제3항, 제125조제

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라 재임 또는 재

직 중이었더라면 직무의 정지

또는 정직의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을 날부터 4년(통보가 있을

날부터 4년이 퇴임 또는 퇴직

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

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 1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

한 처분 내용의 통보) ① 산림

청장과 회장은 조합등 또는 중

앙회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

었더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

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

분 내용을 중앙회 또는 해당 조합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21조제3항, 제125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른 임원의 개선(改選) 또는 직무의 정지

2. 제121조제3항, 제125조제1항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른 직원의 징계면직 또는 정직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회 또는 조합등은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